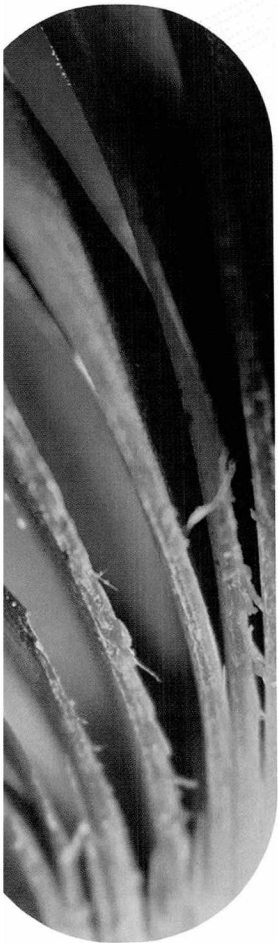


정부, 다제내성결핵환자 의료비 지원

글 김규환(본부 사업관리팀장)



정부는 올해 9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에 '다제내성결핵' 등 13종을 추가해 총 111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.

지원대상자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와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이며, 건강보험급여의 본인부담금 의료비가 지원되는데, 그동안 총 의료비의 30%를 부담하던 법정 본인부담금 전액이 면제돼 사실상 무료진료가 가능해졌다.

저소득층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, 재산수준을 조사하여 선정되는데 최저생계비가 환자가구의 경우는 300%, 부양의무자의 경우는 500% 이내에 해당되어야 한다. (표1 참조)

다제내성결핵환자란 INH(아이나)와 RMP(리팜피신)을 포함한 2제 이상의 항결핵약제에 내성인 결핵환자를 의미한다. 여기에서는 희귀 난치성질환자 중 다제내성결핵환자를 기준으로 하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(<http://helpline.cdc.go.kr>)에서 확인 가능하다.

지원 방법

지원대상기준에 해당하는 다제내성결핵환자(희귀,난치성질환자)가 주민등록지 관할 시장, 군수, 구청장(보건소장)에게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면 시·군·구청장 또는 읍·면·동사무소장(사회복지전담공무원)이 소득 재산 조사 실시 ⇒ 소득 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시·군·구 보건소장이 지원대상자 등록 ⇒ 등록된 지원대상자가 의료비지원 신청 ⇒ 지원대상 의료비여부를 판단한 후 시·군·구 보건소장이 지급

〈표1〉 2007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소득기준표(다제내성결핵기준)

가구규모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최저생계비	436	734	973	1,206	1,405	1,610
환자가구 (일반기준300%)	1,308	2,203	2,919	3,617	4,216	4,829
부양의무자가구 (일반기준500%)	2,180	3,672	4,864	6,028	7,027	8,048

(단위 : 천원)

〈표2〉 2007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재산기준표(다제내성결핵기준)

가구규모/지역	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환자가구 (일반기준 300%)	농 어 촌	118,361	139,835	156,990	173,729	188,109	202,801
	중소도시	124,361	145,835	162,990	179,729	194,109	208,801
	대 도시	145,361	166,835	183,990	200,729	215,109	229,801
부양의무자 자가구(일반 기준500%)	농 어 촌	197,269	233,059	261,651	289,549	313,514	338,001
	중소도시	207,269	243,059	271,651	299,549	323,514	348,001
	대 도시	242,269	278,059	306,651	334,549	359,514	383,001

- 7인이상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산정

(단위 : 천원)